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정성호

2020.12.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정성호

2020.12.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단순 수집·나열하는 데 그침
 -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
 -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필요성)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 이러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
 -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시스템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법·제도의 문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재정정보 연계의 한계를 치유하기 위해 표준연계로직 구축, 국제기준(GFS, PSDS)에 기초한 연계, 국고보조금 연계 등 대안을 고려할 필요

2.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및 공개포털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과 공개포털) 중앙정부는 ‘dBrain과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와 지방재정365’, 교육청 등은 ‘K-edufine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활용, 최근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정성호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581

✉ analysis@kpfis.or.kr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개별 공개포털(‘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공개
-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법적 근거)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및 공개포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

활용 단위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정보공개포털	
	시스템명	법적 근거	정보공개포털명	법적 근거
중앙부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국가재정법 제97조의 2	열린재정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①②	지방재정365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 2
교육청 등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 (K-eduline)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①②	교육재정알리미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e나라도움 (gosims.go.kr)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3

3.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 구조

□ (정보연계 구조)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합해 공개하는 항목은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재정자주도(지방에 국한) 등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수입(국가예산 총수입, ~2020) 지출(국가예산 총지출, ~2020) 수지(통합, 관리재정수지, ~2019) 채무(D1, ~2019)	세입(전국 세입예산, ~2020) 세출(전국 세입예산, ~2020) 수지(전국 지방재정수지, ~2019) 채무(지방채무, ~2017) 재정여건(재정자주도, ~2020)	세입(지방교육재정세입, ~2020) 세출(지방교육재정세출, ~2020) 수지(지방교육재정수지, ~2017) 채무(지방교육채무, ~2017) 재정여건(교육재정자주도, ~2020)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

- 통합해 공개된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적
-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를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할 필요

4. 현재 연계 방법의 한계 및 대안

□ (한계) 재정정보 연계는 시스템 문제로 치부하지만, 실제로 법·제도 또는 거버넌스의 문제로 법·제도의 문제를 치유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문제를 치유할 필요

구분	시스템 문제	법·제도적 문제	거버넌스 문제
우선순위	3	2	1

- (대안) 기존 개별 공개포털은 유지하되, 열린재정(통합재정정보공개플랫폼)에 집계되어야 하고,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 제시,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
-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 개발 시(개발 후 기능 개선) 반영할 필요
 -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해 GFS(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PSDS(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채무)로 연계할 필요
 -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의 실행행액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구조로 변경될 필요

5. 재정정보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정보의 연계 한계는 시스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법·제도 및 거버넌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유할 필요
- 시스템 구축 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

해 사전·사후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국가재정법)

-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국가재정법)
-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보조금법)
- 재정정보의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예, (가칭)재정통계위원회)

목 차

I. 서론	1
II.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및 공개포털	4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4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8
3.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	12
4. 개별 재정관리시스템 및 공개포털 운영의 법적 근거	16
III. 개별 재정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 구조	19
1. 정보연계 구조(항목)	19
2. 소결	24
IV. 현재 연계 방법의 한계 및 대안	26
1. 현재 연계 방법의 한계	26
2. 연계 대안	27
V. 재정정보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56
1. 법제 개편 대안	56
2.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61
VI. 결론	63
〈참고문헌〉	66
〈부록〉	67

표 목차

〈표 2-1〉 K-에듀파인 개선사항 종합	13
〈표 2-2〉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명칭(공개포털명) 및 법적 근거	18
〈표 3-1〉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상세 재정통계	22
〈표 4-1〉 재정정보 연계를 위한 우선순위	27
〈표 4-2〉 정부운영표	31
〈표 4-3〉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32
〈표 4-4〉 정부운영표 및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33
〈표 4-5〉 거래 외 경제유량표	34
〈표 4-6〉 재정상태표	35
〈표 4-7〉 수익명세	36
〈표 4-8〉 비용명세	37
〈표 4-9〉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38
〈표 4-10〉 총채무 요약	39
〈표 4-11〉 만기 및 채무 상품 유형별 총채무	40
〈표 4-12〉 표시통화 및 만기별 총채무	40
〈표 4-13〉 만기 및 채무 상품 유형별 총채무	41
〈표 4-14〉 채권자 거주지 및 채무 상품 유형별, 부문별, 표시통화별 총채무	41
〈표 4-15〉 미상환 총채무 원리금 상환 일정	42
〈표 4-16〉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영유아보육법)	43
〈표 4-17〉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49

그림 목차

〈그림 2-1〉 고립된 재정관리시스템	4
〈그림 2-2〉 중앙재정관리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	5
〈그림 2-3〉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개요	6
〈그림 2-4〉 열린재정(중앙재정알리미)	6
〈그림 2-5〉 차세대 열린재정 구축 개요	7
〈그림 2-6〉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성	9
〈그림 2-7〉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편 방향	10
〈그림 2-8〉 지방재정365(지방재정알리미)	11
〈그림 2-9〉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 구축 경과	12
〈그림 2-10〉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의 구성	14
〈그림 2-11〉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재정알리미)	15
〈그림 3-1〉 중앙재정(열린재정) 통계	20
〈그림 3-2〉 지방재정(지방재정365) 통계	21
〈그림 3-3〉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 통계	21
〈그림 3-4〉 중앙재정 상세통계	23
〈그림 3-5〉 지방재정 상세통계	23
〈그림 3-6〉 지방교육재정 상세통계	24
〈그림 4-1〉 통합재정공개플랫폼 체계	28
〈그림 4-2〉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전달(추진)체계(예시)	44
〈그림 4-3〉 e나라도움_보조사업 현황 검색	48

I. 서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1998년 재정위기를 계기로 빡빡 방식의 재정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른바 3+1 재정개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 예산(top-down budgeting),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을 도입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dBrain을 구축했다.

2000년 중반 들어 중앙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지방교육청 등 단위에서는 지방교육행·재정관리시스템(edufine)을 구축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 예산,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을 IT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재정정보의 연계관리를 근간으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구축되기 전, 개별 부처 단위에서는 제각기 다른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했다(예, NaFIS, FIMSys 등). 그로 인해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고금을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 편성 등을 관리하는 예산정보시스템(FIMSys)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통합한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은 물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정보까지 연계했다. 이렇듯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용주체가 달라서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었고, 하향식 예산제도에 근거한 성과관리를 뒷받침할 수 없어서였다.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스스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가 연계되지 않았던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운영 중이던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일원화했다. 시스템을 일원화한 근본적 이유는 모든 지방자치단

체가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부도 교육 분야의 재정투자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edufine)을 개발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edufine)을 구축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내재된 한계로 인해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체계적 정보 연계는 제한적이다. 최근 중앙, 지방, 지방교육 등 재정관리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K-edufine 완료)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¹⁾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합목적적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일부 재정정보를 단순 통합해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공개할 필요가 있다. 연계는 효율적 재정관리의 근간이자, 재정운영을 명확·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법·제도(거버넌스) 측면의 한계를 치유함과 동시에 구체적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국가재정법 등 법적 측면과 역할 구분 등 거버넌스 측면의 한계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에 대한 한계를 논의한 후 연계의 방향성(예, 표준연계,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자산, 부채, 기능별 지출, 보조금 관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제 재정정보의 단순 연계통합 공시를 넘어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재정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세대 dBrain 재정통계 기능 구현 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구축과는 무관하게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이고 시스템 구축 시 ‘표준연계로직’을 설계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및 재정공개포털에 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재정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 연계의 구조에 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현재 연계 방법의 한계 및 대안에 관해 논의한다. 제5장은 재정정보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에 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글을 맺는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차세대 구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2020년 개발에 착수했으며,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은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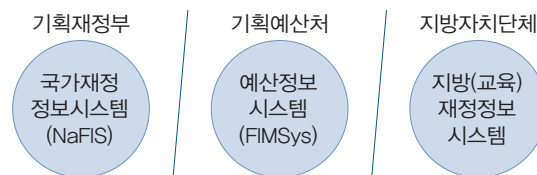
II.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및 공개포털

개별 중앙관서가 활용하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다양하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과 공개포털은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에 국한해 함축적으로 논의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개발되기 전, 국가의 재정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고립된 시스템²⁾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립된 재정관리시스템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산물이 바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다. <그림 2-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를 처리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중기재정운영계획과 단년도 예산 편성을 관리하는 예산정보시스템(FIMSys), 그리고 유관기관(지방(교육)재정관리시스템)의 통합이 선결과제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예산정보시스템(FIMSys)을 통합하고 유관기관 간 재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Jeong & Oh, 2019).

<그림 2-1> 고립된 재정관리시스템



자료: Jeong(2018). p.2.

2)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는 국정과제 회의 시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결정하고, 추진단의 주도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전략기획(BSP), 업무절차재설계(BPR)/정보전략기획(ISP)을 수행했다. 2005년 10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2007년 1월 개통해 지금까지 운용 중이다.³⁾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국가재정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되었다. 그 구성은 메인 시스템 격인 ‘중앙재정정보시스템’, 다양한 사용자들 간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업무 지원시스템’, 재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해 재정 현황 분석에 도움을 주는 ‘통계/분석시스템’, 외부 기관들의 정보를 연결하는 ‘외부연계시스템’등이다.

<그림 2-2> 중앙재정관리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



OLAP : On-Line Analysis Processing(온라인 분석 처리)
 EIS : Executive Information System(경영자 정보 시스템)
 EDW : Enterprise Data Warehouse(기업 데이터 웨어하우스)
 GFS : Government Finance System(정부 재정통계시스템)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내부 자료

3) Jeong(2018)에 의하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1세대는 FIMSys의 초기 버전(DOS 체계로 구동, 5.25인치 디스켓)과 NaFIS의 초기 버전 SALIMI(살림이)로 규정하고 있다. 2세대는 FIMSys와 NaFIS로, 3세대는 현행 시스템으로 명명하고 있다. 차세대 구축 예정인 시스템은 4세대로 명명하고 있다.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범위는 현재의 예산, 지출 등 11개 기능을 개선함은 물론 부담금, 채권 관리, 용자 관리 등 6개 신규기능을 추가하고 그 기능을 모듈화할 계획이다. 또한 OLAP, EIS를 대폭 개선하고 GFS, 국가채무, 재정관리, 부채통계 등을 확대해 구축하며 지방 및 교육재정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2-3〉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개요



자료: 차세대 dBrain의 비전과 구축 전략(2020.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된 공개포털은 열린재정(중앙재정알리미)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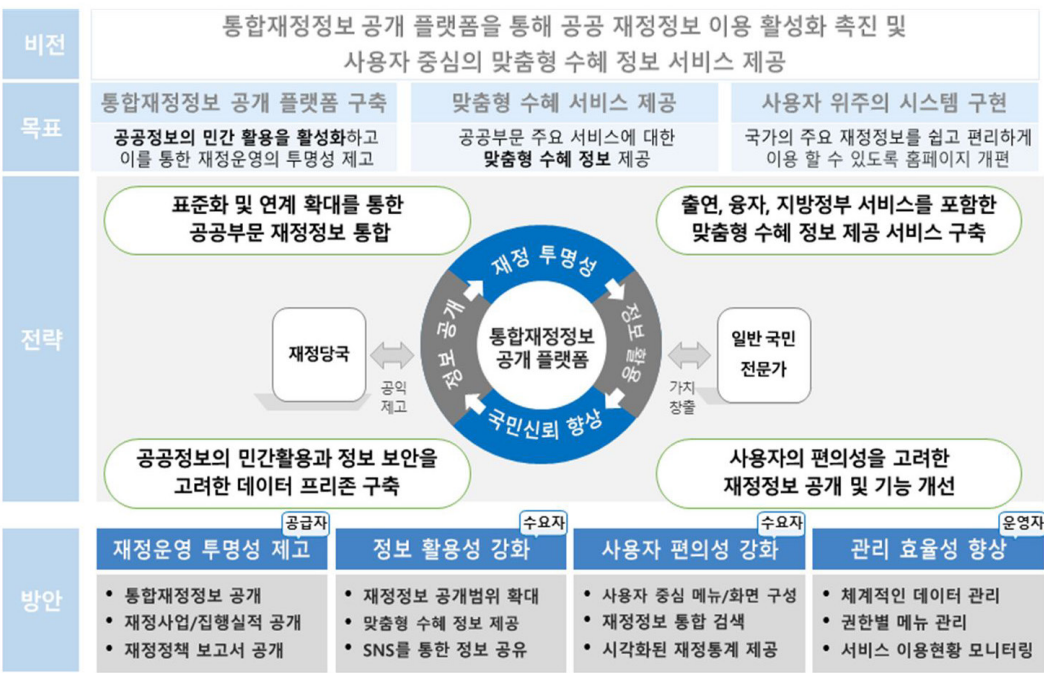
〈그림 2-4〉 열린재정(중앙재정알리미)



자료: 열린재정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차세대 열린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통합재정 정보공개플랫폼을 통해 재정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수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크게 4가지 구축 전략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다. 첫째, 표준화 및 연계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재정정보 통합, 둘째, 출연, 용자,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수혜 정보 서비스 제공, 셋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과 정보 보안을 고려한 데이터 프리존 서비스 제공, 넷째,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재정정보 공개 및 기능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재정당국은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과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통합재정정보 공개플랫폼의 선순환적 사이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림 2-5〉 차세대 열린재정 구축 개요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내부 자료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종합 정보화 계획과 전략적 요구에 부응해 구축하게 되었다. 2003년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별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 회계, 지방세 등의 응용시스템을 각각 개발해 운용해 왔다. 따라서 개별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인 구조라고 하기엔 제약이 따랐다. 즉 2003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은 규모별로 상이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예산회계, 세정, 계약자산, 재정분석시스템을 활용했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회계, 세정, 계약자산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개별적으로 구축·운용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중심으로 구축한 개별 시스템은 업무 간 연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을 활용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계 또한 제한되었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안전행정부도 지방재정을 평가(분석·진단)할 도구가 없었다.

그 즈음 IMF, OECD, IBRD 등 국제기구에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적용을 권고했다. 즉 정부는 발생주의회계, 성과관리, IMF 기준통계 등 새로운 제도 수용에 따른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GFSM2001 기준에 근거해 국가재정통계가 산출될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정성호, 2013).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지방재정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구성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해 재정 현황분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정분석시스템’, 그리고 외부 기관들의 정보를 연결하는 ‘내·외부연계 시스템’ 등이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앙 e-호조는 재정계획, 예산관리, 수입관리, 계약관리, 부채관리, 재무결산, 통합재정으로, 지방 e-호조는 재정계획, 예산관리, 수입관리, 보조금관리, 자산관리, 예산통계, 계약관리, 지출관리, 자금관리, 상시모니터링, 부채관리, 재정연감, 예산결산, 재무결산, 원가관리, 재무

통합결산, 통합재정통계, 기준정보, 사업관리카드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통계분석시스템은 재정분석(종합분석, 재정지표, 예산현황, 집행현황, 예산결산, 위기정보, 운영관리, 통합조건검색)과 중앙응용(재정연감관리, 교부세관리, 재정성과관리, 기준정보관리)으로 구성되고, 지방재정통합 DB검색시스템은 자료목록, 원문열람서비스, 수치정보조회서비스, 비교서비스, 자료조회 마법사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연계시스템은 중앙연계와 자치단체별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앙연계는 감사원의 e-감사시스템, 기획재정부의 dBrain,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세청의 홈택스와 연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연계는 전국공통 시스템(예, 지방세시스템 등), 금고은행(e-세출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예, 부산광역시 등의 성과관리시스템)와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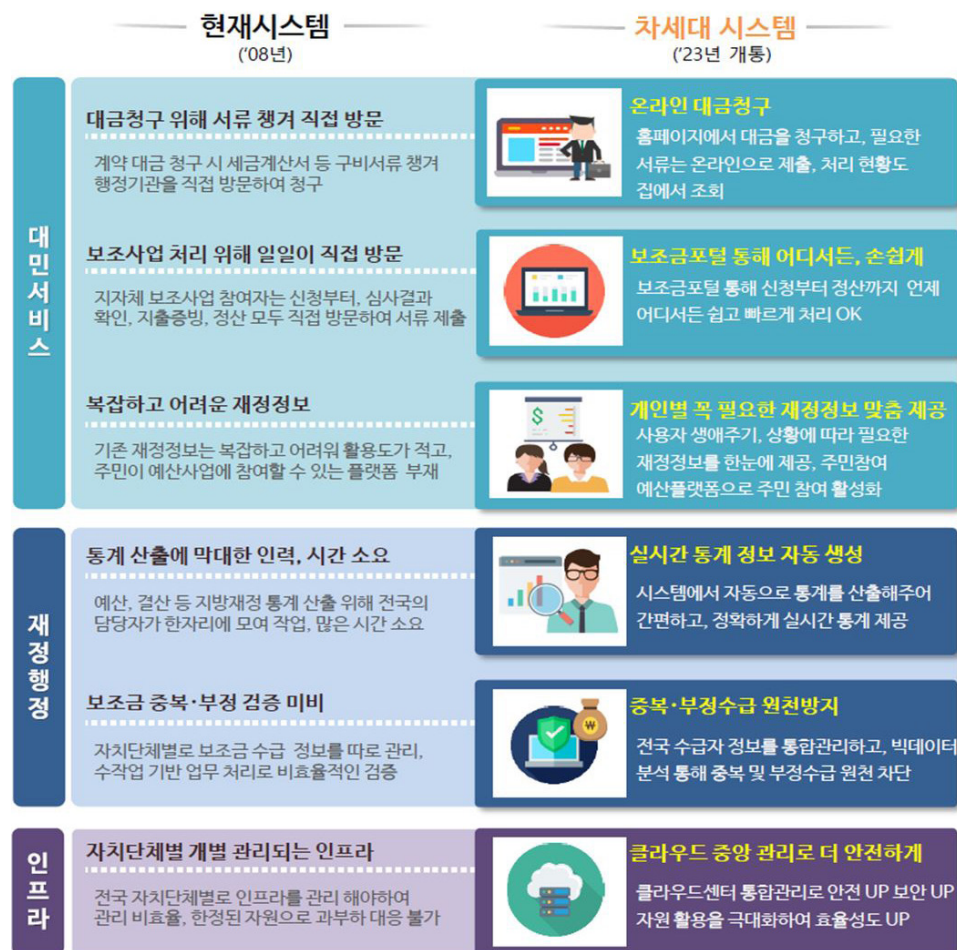
〈그림 2-6〉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

한편 2020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차세대 e-호조)은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이 예산 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여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여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면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그림 2-7〉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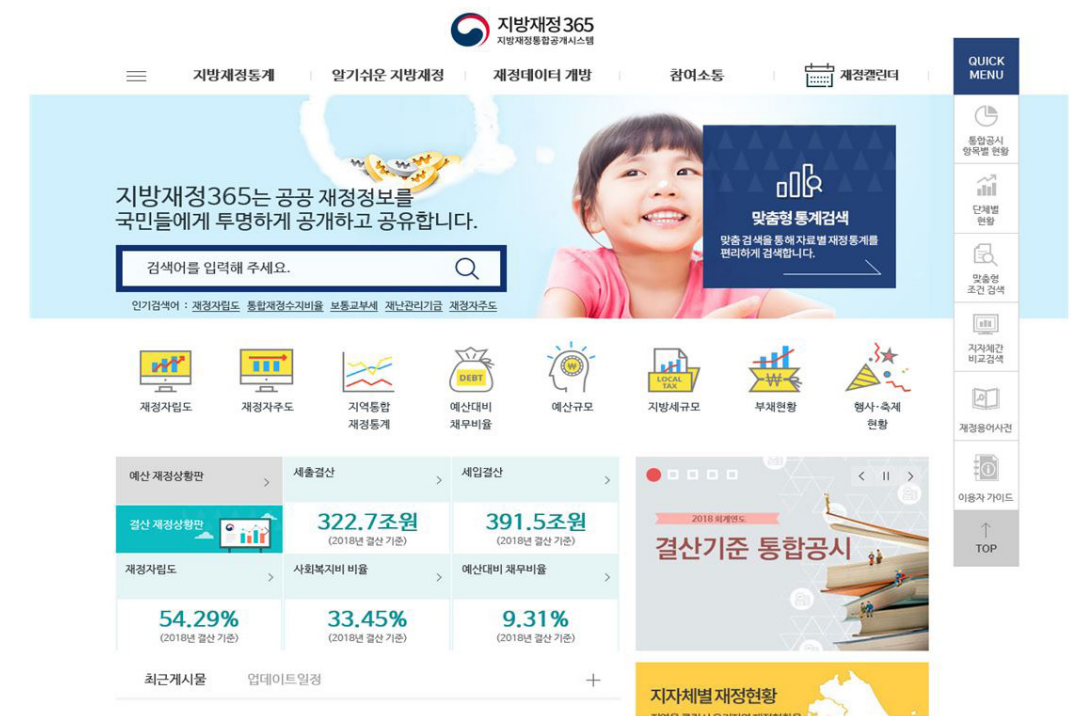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⁴⁾이 본격 가동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 즉,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과 재정 시스템 간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산출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된 지방재정통합재정 공개포털은 '지방재정365'으로, 지방재정365의 구성은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지방재정365(지방재정알리미)



자료: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4)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2020~2022년, 총 1,700여억원, 2023년부터 서비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019~2021년, 총 1,608억원, 2022년 2월 3일부터 본격 서비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2019~2021년, 총 315억원, 2022년 2월 3일부터 서비스.

3.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edufine)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재정투자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BPR/ISP 사업을 시작으로 재정혁신과제 도출, 전략계획 수립(예산 및 회계개혁, 학교회계 개혁, 정보기반 마련) BPR/ISP 추진, 1단계 시스템 구축사업(25개 단위업무: 예산관리, 재무회계, 학교회계, 지식관리, 성과관리, 단위업무관리, 교육부 DW 도입, 내·외부 기관 연계),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통합결산: 예산결산, 재무결산, 통합재정수지; 종합모니터링: 사업정보분석, 자금흐름분석; 원가관리; 통합통계시스템), 시스템 전면 시행(edufine 오픈, 학교회계시스템 오픈)(2008년 1월~)의 과정을 거쳤다.

에듀파인은 2020년 1월 일부 기능이 개통(교비특별회계시스템)된 후, 7월 결산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차세대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공식 명칭은 에듀파인에서 ‘K-에듀파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2-9〉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 구축 경과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K-에듀파인 홍보 페이지(http://www.eduinfo.go.kr/portal/thema/k_edufinePage.do)

K-에듀파인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9.12.31.).

첫째, K-에듀파인에 스마트 스쿨뱅킹(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을 추가 도입해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도 가능하다.

둘째,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시스템) 업무를 단일 환경으로 통합하고, 단순 반복적인 재정문서의 경우 간편·다건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수입 지원금의 이중처리 방식을 단순화(4단계→2단계)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예산을 이중으로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간 수기로 작업하던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는 나이스와 연계해 K-에듀파인에서 지급처리가 가능해졌다.

셋째,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및 대외기관 정보 연계를 대폭 확대해 재정자료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자증빙 환경도 구현했다. 특히 금융결제원, 카드사, 은행 등 전자금융 연계를 확대해 학교회계 검증 기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과 투명한 지방교육재정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의 중기재정계획·기금관리·채권관리 등을 포함해 예산의 계획부터 집행·결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목적재원(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정산까지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표 2-1〉 K-에듀파인 개선사항 종합

구분	기존 에듀파인	K-에듀파인	비고
시스템 통합	에듀파인(재정), 업무관리(행정) 분리 이원화	•에듀파인과 업무관리 통합 단일 시스템	단일 업무 환경
법·제도 변화 반영	일부 제도 적용 미흡	•중기재정계획, 준예산, 기금운용관리, 기금회계 집행·결산 등 신규 도입	예산 전단계 관리
목적재원 관리체계 구축	•재원(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보조금 등) 혼용 편성 * 집행통제 및 실적관리 어려움	•재원별 편성부터 정산까지 목적재원 관리 기능 구축 * 모니터링 및 학교별 재원별 관리	재정투명성 제고
일상경비 통합지출 관리	•부서별 별도 일상경비 출납계좌 관리(미집행액 과다 발생)	•통합지출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일상경비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재정건전성 향상

구분	기존 에듀파인	K-에듀파인	비고
지원금 처리 개선	•세입-세출-세입-세출 4단계 이중처리	•세입-세출 2단계 절차 개선	업무 절차 간소화
전자고지/납부 도입	•매체 : 종이고지서 •발송 : 인편 및 우편 •방법 : 방문 납부	•매체 : 전자고지서(스마트고지서) •발송 : NH스마트고지서 앱 활용 •방법 : 가상계좌 입금 납부	납부자 편의성 제고
법인카드 관리 고도화	•교육회계에 한해 2개 카드사 정보 제공	•학교회계(각급 학교)까지 확대 및 16개 카드사 전체 정보 제공	전자증빙
대외 연계 확대	•14개 기관 연계 정보 291종 •(예) 학교장터 S2B 연계 - S2B 물품정보 검색 불편 - 수익계약 배제업체 정보, 거래처정보, 지출정보 등 계약 연계 정보 부족	•18개 기관(행공선, 환경부, 중기부 등) 연계 정보 323종 •(예) 학교장터 S2B 연계 확대 - S2B 실시간 물품 검색 및 활용 - 필요한 계약정보 연계로 업무처리 간소화	원천 정보 활용 및 정확성 향상
기안기 표준 도입	•아래한글 전용 기안기 * 상용 아래한글 제공 편집 기능 가능	•개방형 문서포맷(ODF) 도입 * 표준규격 제공 편집 기능에 한해 가능(기존에 비해 제한적)	호환성 확보 기능 제한적
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	•호환성 부족 •시각장애인 고려 미흡	멀티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Active-X 제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업무 화면 최적화(스크린리더 적용 등)	웹표준 환경 정보접근 약자 지원

자료: 교육부(2019),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 보도자료

〈그림 2-10〉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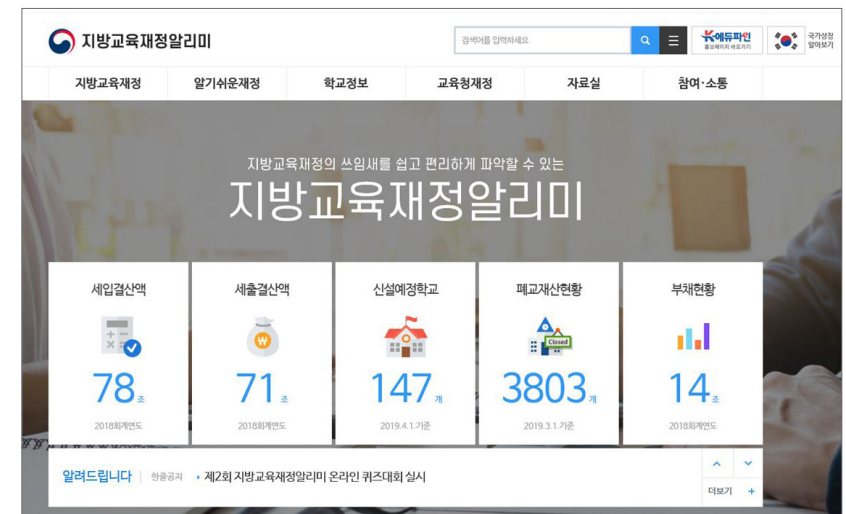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19),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 보도자료

〈그림 2-10〉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차세대 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에 신규로 적용한 모듈은 다음과 같다. 업무관리 모듈에는 모바일, 자료집계가 추가되었고, 재정 분석모듈에는 PSDS(공공부문 부채통계)가 추가됐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기금운용 계획, 채권관리 모듈이 추가되었고, 집행지원 모듈에 카드관리가, 재정서비스 모듈에 전자수납이 각각 추가되었다. 아쉬운 점은 기존 모듈에 일부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크게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통합재정정보공개플랫폼 구축과는 기능 측면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는 듯하다.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 공개포털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이하 교육재정알리미)는 2014년 12월부터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구축했다. 교육재정 알리미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관련 사이트를 연계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 운용에 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11〉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재정알리미)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4. 개별 재정관리시스템 및 공개포털 운영의 법적 근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정관리시스템과 공개포털은 다양하다. 본 절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청) 등이 활용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에 국한해 논의한다. 중앙부처는 중앙 재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dBrain을 활용하며 그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97조의 2이다. dBrain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포털 ‘열린재정’을 활용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9조이다.⁵⁾ 전(全) 지방자치단체 재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e-호조를 활용하고,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①②이다. e-호조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지방재정365’를 활용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 2이다.⁶⁾ 교육청 등은 교육 재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K-edufine을 활용하는데, 그 법

5)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하여 국회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①②이다. K-edufine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명은 ‘교육재정알리미’인데,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 2이다. 다만 K-edufine은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등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지방정부의 고유영역에 해당되는 데, 우리 정부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유추·판단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활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전반을 관리하며, 그 법적 근거는 「보조금관

-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2이다.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은 ‘e나라도움’으로, 그 법적 근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3이다.⁷⁾ 지금까지 논의한 재정관리시스템(명칭과 공개포털명)에 관해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명칭(공개포털명) 및 법적 근거

활용 단위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정보공개포털	
	시스템명	법적 근거	정보공개포털명	법적 근거
중앙부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가재정법 제97조의 2	열린재정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①②	지방재정365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 2
교육청 등	지방교육 행·재정관리시스템(K-edufine)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①②	교육재정알리미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e나라도움(gosims.go.kr)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3

자료: 저자 작성

7)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급이나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③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지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국가재정법」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Ⅲ. 개별 재정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 구조

재정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 연계는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완벽한 연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완벽한 연계는 다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전한 연계보다 일정한 가이드라인(표준연계)에 기초해 일정 부분 연계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왜냐하면 재정관리시스템 간 정보의 온전한 연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실익도 크지 않다. 즉 재정정보의 표준연계면 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활용과 통합플랫폼 중심의 연계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정보 공개포털 중심으로 연계 정보의 구조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1. 정보연계 구조(항목)

dBrain과 e-호조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고, K-edufine은 이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미 구축이 완료된 K-edufine을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간 연계 관점에서 볼 때 체계적인 접근은 아닌 듯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연계 활용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 최소한의 연계지침을 제공했어야 했다. 대안 차원에서 dBrain(열린재정), e-호조(지방재정 365), K-edufine(교육재정알리미)이 연계되도록 협업해 연계로직을 논의했어야 옳다.

현재 열린재정 ‘우리나라 재정현황’에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일부 재정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하고 있다. 수입(세입) 측면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481.8조원, 지방재정은 345조원, 지방교육재정은 73.9조원이며 총 900.7조원이다. 이 숫자는 의미 있는 재정정보라 보기에는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 통합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수입(세입), 지출(세출), 수지, 채무 등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는 내

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재정에 관해 설명하면 수입은 재원별 세입금액 및 구성비(소득세, 법인세 등), 지출은 분야별로 예산 16개 분야와 부문별 구성비, 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관리 재정수지 규모와 GDP 대비 비율, 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 등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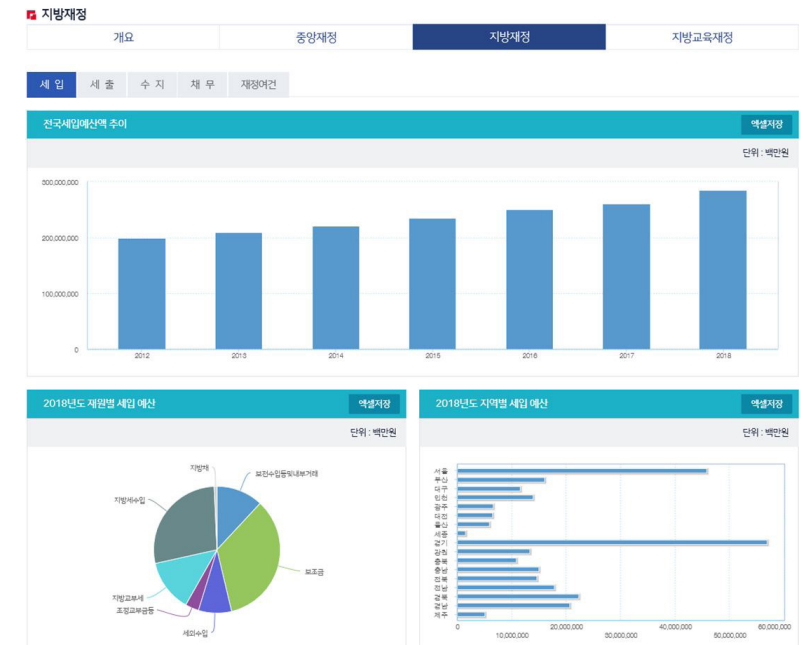
지방재정에 관해 설명하면 세입은 재원별 세입 예산 규모(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출은 분야(기능)별로 예산 16개 분야와 지역별 세출예산, 수지는 전국지방재정수지와 지방재정수지 지역별 비율, 채무는 지방채무 현황 및 지역별 채무비율, 재정여건은 재정자주도 비율과 지역별 비율 등을 공개한다.

지방교육재정에 관해 설명하면 세입은 재원별 세입 예산 규모(자체수입, 지방재정교부금 등)와 지역별 세입예산, 세출은 성질별 예산(자본지출, 전출금 등)과 지역별 세출예산, 수지는 지방교육재정수지와 지방교육재정수지 지역별 비율, 채무는 지방교육재정 채무현황 및 지역별 채무비율, 재정여건은 재정자주도 비율과 지역별 재정자주도 비율 등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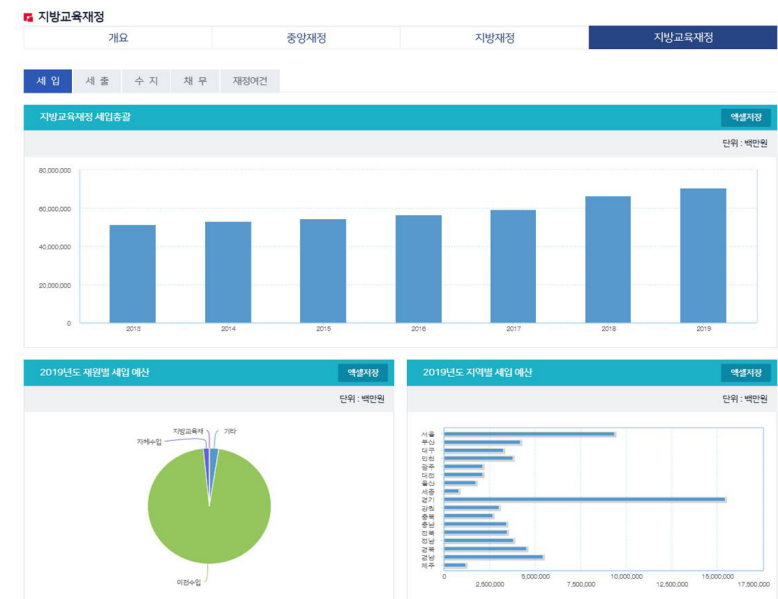
〈그림 3-1〉 중앙재정(열린재정) 통계



〈그림 3-2〉 지방재정(지방재정365) 통계



〈그림 3-3〉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 통계



이제 상세 재정통계의 포괄범위 및 공표주기 등에 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공히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은 2020년까지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재정과 지방재정365’에서 수지는 2019년까지, ‘교육재정알리미’에서 수지는 2017년까지 공개하고 있다. 중앙, 지방 등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정보공개 연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재정알리미’의 수지는 2019년으로, ‘지방재정365와 지방교육채무’는 2019년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열린재정’에 공개되는 채무(D1)는 지방 순채무를 이미 적용해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리를 비약하면, 단순 통합 정보라고 보기에 제약이 있다.

〈표 3-1〉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상세 재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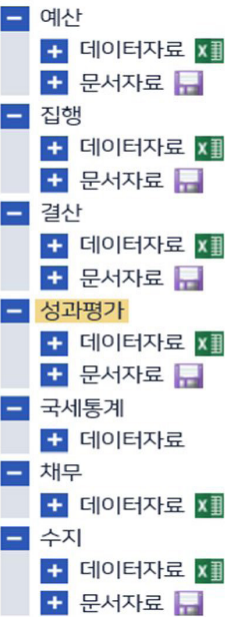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수입(국가예산 총수입, ~2020) 지출(국가예산 총지출, ~2020) 수지(통합, 관리재정수지, ~2019) 채무(D1, ~2019)	세입(전국 세입예산, ~2020) 세출(전국 세입예산, ~2020) 수지(전국 지방재정수지, ~2019) 채무(지방채무, ~2017) 재정여건(재정자주도, ~2020)	세입(지방교육재정세입, ~2020) 세출(지방교육재정세출, ~2020) 수지(지방교육재정수지, ~2017) 채무(지방교육채무, ~2017) 재정여건(교육재정자주도, ~2020)

자료: 열린재정, 우리나라 재정 현황에 기초해 저자 작성(접속일: 2020.10.30.)

개별 재정정보공개를 세분화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 DB는 예산, 집행, 결산, 성과평가, 국세통계, 채무, 수지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재정365 상세재정통계DB는 예산, 결산, 재정건전성, 재정여건을 공개하고 있다.

〈그림 3-4〉 중앙재정 상세통계



〈그림 3-5〉 지방재정 상세통계



교육재정알리미 상세재정통계DB는 예산, 결산, 재정건전성, 재정여건을 공개하고 있다.

〈그림 3-6〉 지방교육재정 상세통계



2. 소결

지금까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개략적인 정보연계 구조에 관해 논의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통합해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리 유의미한 정보는 아닌 듯하다. 이러한 한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표준연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당국과 감사원의 역할(가이드라인 준수 여

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항목에 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통합해 공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즉 개별 재정정보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적어도 중앙,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⁸⁾

둘째, 재정정보를 단순 통합해 공개하기 급급하다 보니 의미 있는 재정정보가 될 수 없다. 적어도 유의미한 정보가 되려면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표 3-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포괄범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시간적 범위조차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채무의 경우 중앙재정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정보인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셋째, 재정정보의 표준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연계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시 표준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 당국과 감사원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기초하면 재정 당국과 감사원의 역할을 ‘시스템 구축 전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계 관점에서 볼 때 재정 당국의 사전 표준연계 가이드라인 제시도 중요하지만 사후 연계 구체화를 위한 역할(감사원)이 더 중요해 보인다.

8) 일반정부 단위(중앙, 지방, 비영리기관)를 포괄범위로 공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IV. 현재 연계 방법의 한계 및 대안

이번 장에서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제반 한계에 관해 논의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연계의 방향성을 대안으로 논의한다.

1. 현재 연계 방법의 한계

재정정보의 연계와 관련된 제반 한계는 시스템, 법·제도, 거버넌스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1) 시스템의 문제인가?

재정정보의 연계는 시스템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흔히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게 된다.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재정정보 연계의 한계는 시스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하나의 수단, 즉 재정운영의 결과를 도출해주는 장치에 불과하며, 초기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시 연계로직을 구체화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목적(문제 해결)과 수단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시스템)이 목적(연계)을 대신할 수 없다.

2) 법·제도적 문제인가?

흔히 우리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법·제도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즉 우리는 법·제도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재정정보 연계 또한 이러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재정정보의 연계는 법·제도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법에서 이를 구체화하지 않아 한계(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등에서 연계를 새롭게 규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3) 거버넌스(세부 프로세스)의 문제인가?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법·제도만 있으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도 실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정정보의 연계는 ‘통계 작성’이라는 범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 할거주의 등에 기초해 쌓아 놓은 정보를 이리저리한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정정보의 연계 활용이라는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 당국을 근간으로 ‘(가칭)재정통계위원회’ 신설을 고려할 수 있겠다. 함축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구축을 이야기하곤 한다. 한마디로 시스템 만능주의라 할 수 있다. 실상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듯 하다. 실제로는 거버넌스 문제에 불과한데 시스템 또는 법·제도의 문제로 치부하곤 한다. 그로 인해 시스템만 구축하게 되는데, 연계는 요연해진다. 즉 시스템만 구축하면 응당 연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일종의 3중 오류)이다. 법·제도의 문제도 치유해야 하겠지만, 우선 거버넌스 문제를 치유해야 비로소 연계가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를 근간으로 재정정보의 연계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4-1〉 재정정보 연계를 위한 우선순위

구분	시스템 문제	법·제도적 문제	거버넌스 문제
우선순위	3	2	1

2. 연계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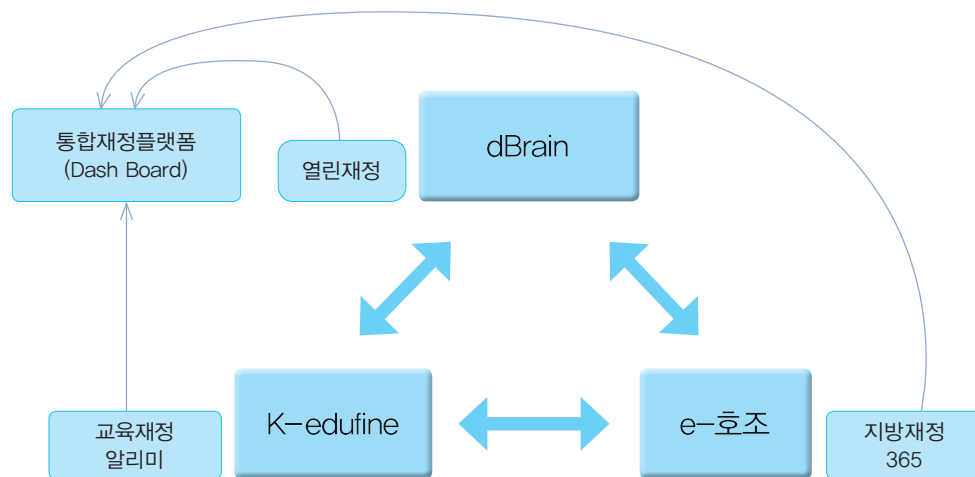
1) 재정정보 연계 구조

현재와 같이 개별 공시구조(예,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등)는 부처의 의지에 따라 유지하되, 재정정보의 통합공개플랫폼 구현 차원에서 대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열린재정 홈페이지의 ‘우리나라 재정현황’란에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해 공시하고 있다. 그마저 일부 재정지표(세입, 세출, 채무, 수지 등)에 불과하고 시계열 불일치(공표 주기) 등의 이유로 비교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총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연계 활용 불가능). 따라서 재정정보 공시의 포괄범위, 공개할 지표 등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하면, 기존 개별 공개포털은 불가피하게 유지하되 통합재정공개플랫폼 차원에서 ‘열린재정’에 집계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재정정보의 단순 통합 공개는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다. 재정정보의 연계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이른바 ‘표준연계 가이드라인’)는 물론, 미래 지향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포괄하는 일반정부 단위의 정보를 공시해야 마땅하다.

〈그림 4-1〉 통합재정공개플랫폼 체계



주: 세부 로직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dBrain 미사용 기관 등의 정보도 통합재정플랫폼에 집계 필요
자료: 저자 작성

2) 재정정보 연계 구체화 방안

(1) 표준연계로직 구축에 따른 연계

정부는 무슨 재정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재정정보의 단순 통합을 넘어 재정정보를 표준화해서 연계해야 한다. 이른바 표준연계로직 구축이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시스템과 새롭게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할 때 표준연계로직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현행 시스템에서 일부 로직을 개편 또는 신설해 표준연계로직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K-edufine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표준연계로직을 구성해 차세대 dBrain과 e-호조는 시스템 구축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K-edufine에 반영해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GFS 등 국제기준에 따른 연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포털 ‘열린재정’은 ‘우리나라 재정현황’(수입, 지출, 수지, 채무 등) 및 재정공시(예산, 집행, 결산, 성과평가, 국세통계, 채무, 수지 등)에서 중앙재정, 지방, 교육재정 정보를 단순 취합해 공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공개되는 재정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단순 취합 정보의 범위를 넘어 국제기준 재정통계를 작성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한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정보를 자산(금융, 비금융), 부채(금융), 기능별 지출(COFOG) 등으로 포괄적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기준은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하면 된다.

GFS는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PSDS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채무를 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IMF, 2014; IMF, 2013).

① GFS 주요 통계표

GFS 기준에서 우선 활용 가능한 주요 통계를 제시하면 재정(정부)운영표, 현금 원천 및 사용표, 재정상태표 등이다.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적용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통계표는 재정 당국이 국가결산보고서(지방결산서 포함)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작성한다.⁹⁾ 미래 지향적으로 시스템에서 이러한 통계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통계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단위의 정부운영표(재정운영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dBrain의 중앙정부 결산 정보를 활용해 재정운영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한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결국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도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통계표를 작성하기 위해선 수작업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통계표를 작성한다고 해도 중앙정부만 작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운영표는 수익, 비용, 비금융자산의 순투자, 금융자산의 순취득, 순융자/순차입, 부채의 순부담과 관련된 거래의 세부사항을 알수 있다. 여기서 순융자/순차입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제시한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재정수지 지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정상적 운영 활용, 비금융자산의 거래, 금융자산, 통화 및 예금 간 거래 이외 금융자산 및 부채 관련 거래를 통해 유입 또는 유출되는 현금의 총액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현금 흑자 및 적자는 정부운영표상 순융자/순차입과 대응되는 지표이다.

9) 재정 당국에서 이를 작성해 IMF에 보내면, IMF는 이를 활용해 GFS Yearbook을 발간한다.

〈표 4-2〉 정부운영표

GFS 코드	GFS 계정명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1	수익
11	조세
12	사회보험료
13	출연
14	기타수익
2	비용
21	비용자보상
22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23	고정자본소비
24	이자
25	보조
26	출연
27	사회급여
28	기타비용
NOB / GOB	순/총운영수지(1-2) ¹⁾
비금융자산 거래	
31	비금융자산의 순/총투자 ²⁾
311	고정자산
312	재고자산변동
313	기타유기물
314	비생산자산
2M	지출(2+31)
NLB	순융자(+)/순차입(-) (1-2-31-1-2M=32-33)
금융자산과 부채 거래(보전활동)	
32	금융자산의 순취득
321	국내 ³⁾
322	해외 ³⁾
33	부채의 순부담
331	국내 ³⁾
332	해외 ³⁾

¹⁾순운영수지(NOB)=수익-비용, 총운영수지(GOB)=수익-(비용-고정자본소비)
²⁾비금융자산 순투자=고정자본 취득-고정자본처분-고정자본소비, 비금융자산, 총투자=취득-처분
³⁾금융상품별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문별 분류 참고
자료: IMF(2014), GFSM 2014, 표 4.1

〈표 4-3〉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GFS 코드	GFS 계정명
운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C1	수익 현금흐름
C11	조세
C12	사회기여금
C13	출연
C14	기타수익
C2	비용 현금흐름
C21	파용자보상
C22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C24	이자
C25	보조
C26	출연
C27	사회급여
C28	기타지출
C10	운영활동에 따른 현금 순유입(1-2)
비금융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	
C31	비금융자산투자에 따른 현금 순유출 ¹
C311	고정자산
C312	재고자산 ²
C313	기타유가물
C314	비생산자산
C2M	지출 현금흐름(2+31)
CSD	현금흑자(+)/현금적자(-) (1-2-31-1-2M=32-33)
금융자산 및 부채거래에 따른 현금흐름(보전활동)	
C32x	현금 이외의 금융자산 순취득
C321x	국내 ³
C322x	해외 ³
C33	부채의 순부담
C331	국내 ³
C332	해외 ³
NFB	보전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입(33-32x)
NCB	현금저량의 순변동(CSD+NFB=3202=3212+3222)

¹비금융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 순유출=취득-매각

²재고자산(현금주의 기준)은 전략적 저량으로 변동 제한, 기타재고자산은 취득 시 비용으로 간주

³금융상품별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문별 분류 참고

자료: IMF(2014), GFSM 2014, 표 4.2

〈표 4-4〉 정부운영표 및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정부운영표(발생주의 기준)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현금주의 기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운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1	수익	C1	수익
2	비용	C2	비용
NOB/GOB	순/총운영수지(1-2) ¹	C10	운영활동에 따른 현금순유입(1-2)
비금융자산 거래		비금융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	
31	비금융자산의 순/총투자 ²	C31	비금융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순유출 ³
2M	지출	C2M	지출 현금흐름
NLB	순유자(+)/순차입(-) (1-2-31=1-2M=32-33)	CSD	현금흑자(+)/현금적자(-) (C1-C2-C31=C1-C2M=C32-C33)
금융자산 및 부채 거래(보전활동)		금융자산 및 부채 거래에 따른 현금흐름(보전활동)	
32	금융자산의 순취득	C32	현금 이외 금융자산의 순취득
33	부채의 순부담	C33	부채의 순부담
		NFB	보전활동에 따른 현금 순유입(C33-C32x)
		NCB	현금저량의 순변동(CSD+NFB)

¹운영수지=수익-비용, 총운영수지=수익-(비용-고정자본소비)

²비금융자산 순투자=고정자본취득-고정자본처분-고정자본소비, 비금융자산 총투자=취득-처분

³비금융자산투자에 따른 현금순유출=취득-매각

자료: 정성호(2015), p.10 일부 수정, 원자료: IMF(2014) GFSM 2014 표 4.1 및 표 4.2

거래 외¹⁰⁾ 경제유량표는 거래에 기인하지 않는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의 증감을 표시한다. 즉 보유이득과 손실로 인한 순자산의 증감과 자산 규모의 기타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증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10) 거래 외는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유 자산의 증감(보유이득 및 손실)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5〉거래외 경제유량표

GFS 코드	GFS 계정명
9 거래 외 경제유량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4+5) ¹	
4	보유이득 및 손실로 인한 순자산 변동
41	비금융자산
411	고정자산
412	재고자산
413	기타 유가물
414	비생산자산
42	금융자산 ²
43	부채 ²
5	자산 및 부채 규모의 기타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
51	비금융자산
511	고정자산
512	재고자산
513	기타 유가물
514	비생산자산
52	금융자산 ²
53	부채 ²

¹거래외 경제유량의 상세분류는 (GFSM 2014, 표 10.2)를 참고

²금융상품별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문별 분류 참고(GFSM 2014, 표 9.1 및 9.2)

자료: IMF(2014), GFSM 2014, 표 4.3

재정상태표¹⁾는 특정한 시점(기초 및 기말)에 기관 단위가 소유한 자산과 부채의 저량가치를 나타내는 표이다. 특히 기초와 기말 간 자산과 부채의 저량을 비교해 제시한다. 재정상태표의 주된 수지 항목은 순자산이다. 즉 단위 자산의 총가치에서 부채의 총가치를 차감하는데, 순자산의 증감은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지표 중 하나이다.

수익은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수익거래는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의미하며, 수익은 조세, 사회기여금, 출연, 기타수익으로 구성된다.

11)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대차대조표라 부른다.

〈표 4-6〉재정상태표

GFS 코드	GFS 계정명	기초수지	기말수지
6	순자산(61+62+63)		
61	비금융자산		
611	고정자산		
612	재고자산		
613	기타유가물		
614	비생산자산		
62	금융자산		
621	국내 ¹		
622	해외 ¹		
63	부채		
631	국내 ¹		
632	해외 ¹		
부기항목 ²			
			

¹금융상품별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문별 분류 참고(GFSM 2014, 표 9.1 및 9.2)

²재정상태표상 포함되어야 할 표준 부기항목 목록은 GFSM 2014, 7장을 참고

자료: IMF(2014), GFSM 2014, 표 4.4

〈표 4-7〉 수익명세

GFS 코드	GFS 계정명	GFS 코드	GFS 계정명
1	수익	12	사회보험료
11	조세	121	사회보장보험료
111	소득 및 이익세	1211	피용자보험료
1111	개인소득세	1212	고용주보험료
1112	법인세	1213	자영업자 또는 비취업자의 보험료
1113	기타소득 및 이익세	1214	기타
112	급여 및 인력세	122	기타사회보험료
113	재산세	1221	피용자보험료
1131	부동산세	1222	고용주보험료
1132	순재산세	1223	암묵적 보험료
1133	상속세/증여세	13	출연
1134	자산거래세	131	외국정부의 출연
1135	기타 비반복적 재산세	1311	경상
1136	기타 반복적 재산세	1312	자본
114	재화 및 서비스세	132	국제기구의 출연
1141	일반매매거래 부가가치세	1321	경상
11411	부가가치세	1322	자본
11412	판매세	133	여타 일반정부의 출연
11413	거래세 및 기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반조세	1331	경상
1142	물품세	1332	자본
1143	전매이익세	14	기타수익
1144	선별서비스세	141	재산소득
1145	재화이용 영업활동허가세	1411	이자
11451	차량세	1412	배당
11452	기타 재화이용 영업활동허가세	1413	준기업 소득의 인출
1146	기타 재화 및 서비스세	1414	보험가입자에 귀속되는 재산소득
115	국제무역거래세	1415	토지대여료
1151	수입관세	142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
1152	수출관세	1421	시장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1153	수출입 전매이익세	1422	행정수수료
1154	외환 거래이익세	1423	시장외적기관에의한 부수적 판매수익
1155	외환세	1424	재화와 서비스의 암묵적 판매수입
1156	기타무역거래세	143	벌금, 과태료, 몰수금
116	기타 조세	144	출연이외 자발적이전
		1441	경상
		1442	자본
		145	기타 미분류수익

자료: IMF(2014), GFSM 2014, 표 5.1

비용은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즉 비용거래는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며, 비용은 피용자보상,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고정자본소비,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표 4-8〉 비용명세

GFS 코드	GFS 계정명
2	비용
21	피용자보상
211	급여 및 임금
212	사회보험료
2121	명시적 사회보험료
2122	암묵적 사회보험료
22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23	고정자본소비
24	이자
241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이자
242	일반정부 이외의 거주자에 대한 지급이자
243	여타 일반정부에 대한 지급이자
25	보조
251	공기업에 대한 보조
252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
26	출연
261	외국정부에 대한 출연
2611	경상
2612	자본
262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2621	경상
2622	자본
263	여타 일반정부에 대한 출연
2631	경상
2632	자본
27	사회급여
271	사회보장급여
272	사회부조급여
273	고용주사회급여
28	기타비용
281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282	기타 미분류비용
2821	경상
2822	자본

자료: IMF(2014), GFSM 2014, 표 6.1

정부기능별 분류(COFOG)는 일반정부 단위가 다양한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자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에 대한 상세한 분류이다. GFS 체계는 세 번 개정되었는데 GFSM 1986(현금주의 기준), GFSM 2001과 GFSM 2014(발생주의 기준)이다. 처음 버전인 GFSM 1986에 따르면 정부 기능은 14개로 분류되었다.¹²⁾ GFSM 2001과 GFSM 2014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정부 기능(분야)은 10개로 분류된다.¹³⁾

〈표 4-9〉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GFS 코드	GFS 계정명
7	총지출
701	일반공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
705	환경보호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7	보건
708	휴양, 문화, 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자료: IMF(2014), GFSM 2014, 표 6A.1

② PSDS 주요 통계표

PSDS는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양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부채는 상품 유형별(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연금·표준화상품, 기타 미지급 및 미수) 원 만기 및 잔존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이자율(고정, 변동), 채권자 거주지별(국내, 국외)로 제시한다. 부기항목표는 만기 및 상품 유형별 정부 보증채무와 연체 및 상품 유형별 연체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12) 현행 예산체계 16대 분야는 GDSM 1986 기준의 14개 기능(지출)을 근간으로 설계되었다. 14개 기능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휴양·문화·종교, 농업 등, 광물자원·제조 등, 교통 및 통신, 기타 경제, 기타 미분류 등이다.

13) COFOG는 10개 분야(대분류), 69개 부문(중분류), 109개 등급(소분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EU 등 국가는 69개 부문(중분류)을 재정정책의 방향성(근간)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표 4-9〉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보호(710)의 경우 9개로 구성되는데, 질병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등이다.

〈표 4-10〉총채무 요약

구분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및 시장가치		
	총채무	채무 상품 대응 금융자산	순채무
총채무 합계			
1. 상품 유형별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 미수 계정			
2-1. 원 만기별; 2-2. 잔존 만기별			
단기, 장기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 미수 계정			
3. 표시 통화별			
자국통화, 외화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 미수 계정			
4. 이자율 유형별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 미수 계정			
5.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채권자, 국외 채권자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 미수 계정			
부기 항목			
정부보증채무			
연체			

자료: IMF(2013), PSDS, 표 5.1

〈표 4-11〉 만기 및 채무 상품 유형별 총채무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합계		
채무 상품 유형별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단기, 원 만기별; 장기, 원 만기별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		
만기 1년 이하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만기 1년 초과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자료: IMF(2013). PSDS, 표 5.3

〈표 4-12〉 표시통화 및 만기별 총채무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합계		
자국 통화 표시 단기, 원 만기별 장기, 원 만기별 만기 1년 이하 만기 1년 초과		
외화 표시 단기, 원 만기별 장기, 원 만기별 만기 1년 이하 만기 1년 초과		

자료: IMF(2012). PSDS, 표 5.4

〈표 4-13〉 만기 및 채무 상품 유형별 총채무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합계		
고정이자율 상품 자국 통화표시 외화 표시		
변동이자율 상품 자국 통화표시 외화 표시		

자료: IMF(2013). PSDS, 표 5.5

〈표 4-14〉 채권자 거주지 및 채무 상품 유형별, 부문별, 표시통화별 총채무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총채무 합계		
국내 채권자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국외 채권자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변동이자율 상품 자국 통화표시 외화 표시		
국내 채권자 일반정부 ¹ 중앙은행 ¹ 중앙은행 외 예금수취 기관 ¹ 기타 금융기관 ¹ 비금융 기업 ¹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국외 채권자 일반정부 중앙은행 국제 기구 그 밖의 금융기업 기타 비거주자		
국내 채권자 자국 통화표시 외화 표시		
국외 채권자 자국 통화표시 외화 표시		

자료: IMF(2013). PSDS, 표 5.6a, 5.6b, 및 5.6c

〈표 4-15〉미상환 총채무 원리금 상환 일정

	1년 이하(월)					1년 초과~2년(월)		2년 초과 ~5년	5년 초과
	즉시상환	0~3	3~6	6~9	9~12	12~18	18~24		
상품 유형별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융자 보험, 연금, 표준화보증상품 기타 미지급 계정	-	-	-	-	-	-	-	-	
표시 통화별 자국 통화표시 원금 ² 이자 ³ 외화 통화표시 원금 ² 이자 ³									
부기 항목 옵션 채무증권 ⁴ 보증공적채무 ⁵ 원금 ² 이자 ³ 공적보증사적채무 원금 ² 이자 ³									

¹요구 즉시 상환 또는 만기가 임박한 채무이며, 연체, 연체이자, 일부 예금이 포함

²당초 원금을 지칭

³연체이자, 연체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이자로 구성

⁴특정 시점 또는 그 이후 채무자에게 채무를 되팔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된 증권만 포함

⁵총부채 통계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의 보증 채무는 0. 이는 보증 채무가 이미 채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총부채 통계가 공공부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의 보증 채무에는 보증인이 자신의 총부채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공공부문 단위에 보증을 제공한 채무 금액이 반영

자료: IMF(2013), PSDS, 표 5.7

(3) 국고보조금 정보의 연계

국고보조금에 관한 정보는 e나라도움(gosims.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정보는 소관부처별 예산 위주의 정보로 결산정보가 아닌 정산정보라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정보는 예산의 분야-부문, 비목(목, 세목)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정보라 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현재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첫째, dBrain 등 시스템과 e나라도움에서 관리되는 보조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국고보조금은 3대 재정관리시스템(dBrain, e-호조, K-에듀파인)과 e나라도움(예치형과 비예치형)을 통해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는 다양한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집행된다. e나라도움은 14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작동되는 구조이며,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관련된 시스템은 각기 다르다.¹⁴⁾ 예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해당 보조사업 추진체계에 관해 알아본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자체 직접 수행형 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dBrain과 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이다(〈그림 4-2〉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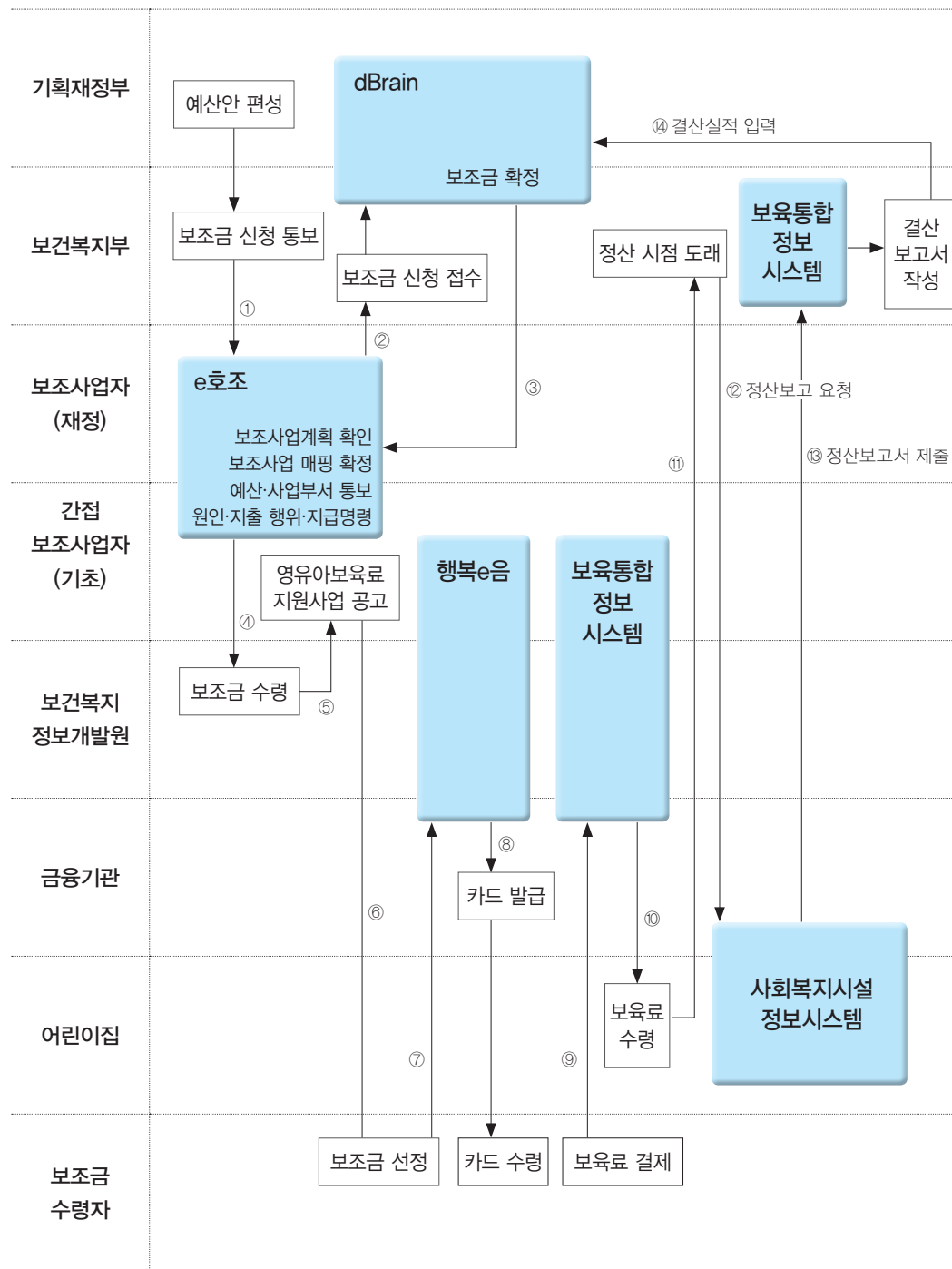
〈표 4-16〉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영유아보육법)

구 분	내 용
프로그램-단위-세부사업	보육지원 강화-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역사업	0~2세 지원, 시간연장 지원, 장애아동 지원
사업 내용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 지원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비용 결제
관련 조직	광역, 기초, 금융기관, 복지정보개발원, 어린이집
관련 시스템	dBrain, 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교부 채널	지자체 직접 수행형-교부형 - 중앙관서 - 지자체 → 수혜자

자료: 저자 작성

14)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①의료급여중합정보지원시스템 ②행복e음 ③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④보육통합정보시스템 ⑤전자바우처시스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⑥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⑦Agrix,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⑧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기금지원시스템) ⑨문화누리카드시스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⑩e-보훈시스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⑪고용보험시스템 ⑫HRD-NET ⑬WorkNet ⑭일모아시스템 등이다.

〈그림 4-2〉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전달(추진)체계(예시)



자료: 저자 작성

둘째, e나라도움 시스템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액, 실집행액을 교차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교부집행액과 실집행액이 실제로 맞지 않다. 예컨대 e-호조와 기존의 edufine 시스템에서 보조사업을 변경한 이후 기존 사업의 실적을 제외하지 않아 중복 계산되는 경우, 집행 실적에 전기 이월금액이 포함된 경우, 집행 실적을 e나라도움에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등에서 비롯된다(한승희, 2019).

따라서 e나라도움에서 두 집행액 간 차이를 검증하는 등 정합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호조 등 시스템에서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과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e나라도움에서 국고보조금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행복e음 등의 실집행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그림 4-2〉 참고).

셋째, 미래 지향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속성 정보에 더해 수혜자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조금 공개체계는 속성 정보만 보여주고 있다. 부가적으로 수혜자 정보를 포함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영국의 The 360Giving Data Standard에 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he 360Giving Data Standard

The 360Giving Data Standard provides a common way for funders to share data about their grants

Home

Support

Search

For open data to be really useful it has to follow an agreed format – a standard – so it can be easily compared with data from other organisations.

We have developed the 360Giving Data Standard for this purpose. This means that when all the different datasets are linked to the 360Giving Registry, they can be easily “read” by different applications. This is how we make sure that when you use the data, the results that come up can be compared.

The 360Giving Data Standard is:

- ▶ **Open data driven** – providing a common way to share information on grantmaking.
- ▶ **Easy to use** – with a simple spreadsheet format for publishing and consuming data, backed up by a structured data model, JSON serialisation and conversion tools.
- ▶ **Comprehensive** – providing a 360 degree view of grantmaking and supporting in-depth analysis of grants, grantees and beneficiaries.

360Giving Data Standard는 보조사업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 해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로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sing the data

You can access and use 360Giving data in different ways. The platforms below are some that we have developed to help you explore, compare and visualise the data.

GrantNav

A search engine for grants data. Explore and download data about where funding goes and how much is given across billions of pounds of grants, for causes and locations across the UK.

360Insights

A free tool to help you understand funders better. You can combine and visualise 360Giving and charity data, and explore funders across different areas – from their grant dates to types of recip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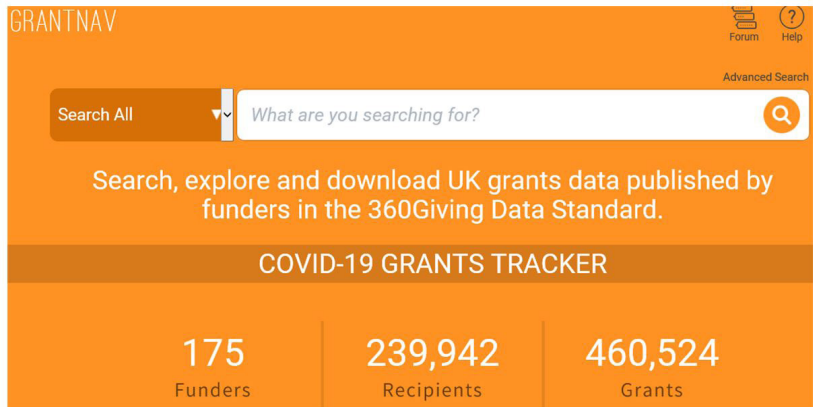
Data Registry

A list of all the organisations that currently publish their grants data in the 360Giving Data Standard, with direct links to their data 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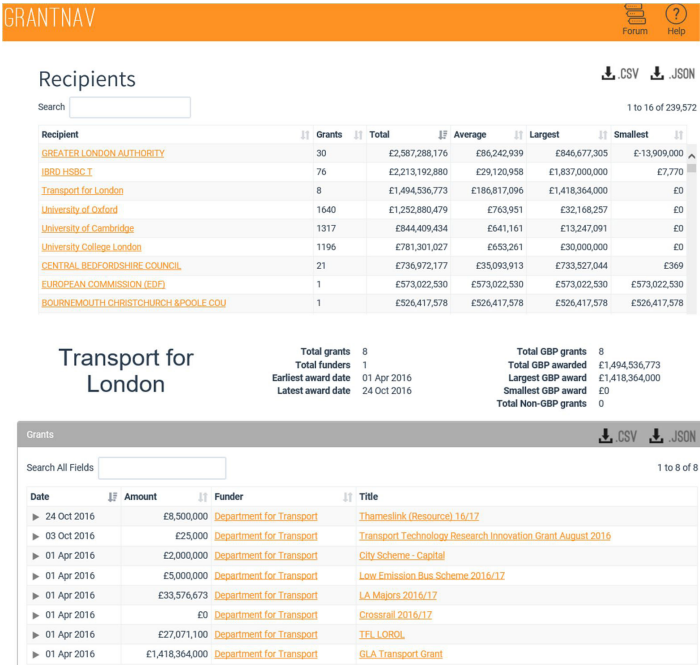
Datastore

The 360Giving Datastore offers a convenient way for developers, researchers and other users with more complex needs to access grants data published in the 360Giving Data Standard.

특히 GrantNav는 보조사업자, 수혜자, 보조사업 규모를 공개하고 있다.



수혜자 중심의 정보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다음 그림 셋째 줄에 있는 Transport for London사업은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총규모, 평균, 최대, 최소 금액을 공개하고 있다.



넷째, 범부처 사업 정보(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칭)를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관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에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출 정보만 보여주는 것에 그칠 승산이 크다. 여러 부처가 연계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범부처 국고보조사업은 개별 중앙부처(관서)별로 사업을 관리하는 대신 재정 당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예컨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초한 사업). 이를 시스템에도 반영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범부처 사업은 예산을 편성한 후 지출 거버넌스를 ‘지출승인법’으로 통제하고 있다.¹⁵⁾

다섯째, 국고보조금사업을 보조사업별로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중앙관서별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시행령 별표 1항과 연계되지 않는다. 즉 방

15) 예컨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을 미국의 지출승인법에 대입해 보면 전체 사업예산은 35조원이고, 사업 주체는 기재부, 여가부, 고용부, 복지부 등이며, 구체적인 사업 목표는 무엇인지,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파악이 제한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관해 검색한 결과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차수, 수행기관(보조사업자), 사업비를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서울의 경우 35%(국가 65%, 서울시 35%)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영주시의 경우 국가가 65%(국가 65%, 영주시 35%)를 부담해야 한다. <그림 4-3>에서 공개하고 있는 1~4번 사업(영주시, 경산시, 양산시, 울산 동구)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계산해 봤다. 보조금법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주시는 53.8%, 경산시는 33.3%, 양산시는 33.3%, 울산 동구는 33.3%씩 부담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마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부담금을 합쳐 3조7,334억원이고, 순수 국고보조금은 2조5,517억원이다(<부록 2> 참고).

〈그림 4-3〉 e나라도움_보조사업 현황 검색

보조사업 현황 | 수행단계별 현황 | 평가 현황 | 서비스 유형별 현황

보조사업 현황

내역사업별

보조사업별

회계연도

2020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영유아보육료

수행기관

Q 검색

보조사업 목록

(단위:천원) ☒ 엑셀 ☐ CSV ☐ TXT

± 다운로드

Q 보조사업자상세

순번	회계연도	보조사업	보조 사업 차수	수행기관 (보조사업자)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타부담금
1	2020	(국)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2	경상북도 영주시	4,548,797	2,449,352	0	0
2	2020	(국비보조)영유아보육료지원	2	경상북도 경산시청	19,591,159	6,530,386	0	0
3	2020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2	경상남도 양산시	37,147,222	12,382,407	0	0
4	2020	0-2세 보육료(영유아보육료)	2	울산광역시 동구	15,589,000	5,195,822	0	0
5	2020	0-2세 영유아보육료	2	전라북도 익산시	19,889,250	6,621,000	0	0
6	2020	[국]영유아보육료 지원	2	경상북도 상주시	3,301,103	1,777,518	0	0
7	2020	[국]영유아보육료 지원	2	경상북도 안동시	8,448,165	4,549,012	0	0
8	2020	[국비]영유아보육료 지원	2	경상북도 문경시	2,895,910	1,559,336	0	0
9	2020	국)영유아보육료지원	2	경상북도 영천시	4,301,239	2,316,052	0	0
10	2020	영유아보육료	2	경기도 포천시	8,426,904	4,537,564	0	0

자료: e나라도움-보조사업 현황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보조금 세부 정보를「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기준보조율 항목 122개)에 기초해 구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4-17〉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비용부담		
			중앙	지방 (광역, 기초)	사업자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7. 배수 개선	100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100				
나. 지방관리	50				
9.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10. 토양개량사업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나. 개별시설	20				
다. 공동자원화 시설 퇴비화·액비화 시설	40				
라. 공동자원화 시설(에너지화 시설)	50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14. 농기계 임대사업	50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10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농어촌공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48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IV. 현재 연계 방법의 한계 및 대안 49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비용부담		
			중앙	지방 (광역, 기초)	사업자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23. 농산물 유통 개선	4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권을 말한다)은 수익자 부담 5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산: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 지원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10				
나. 광역시(종인처리시설)	50				
다. 시지역(읍 이상)	50				
라. 군지역(면 이하)	70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 지역	8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 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 지역)	70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8. 경전철 건설	정액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비용부담		
			중앙	지방 (광역, 기초)	사업자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100				
나. 기타	50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60				
나. 큰나무	50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4. 임산물 생산 기반 정비	20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용지매입비 제외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50(70)				
나. 경기장	3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비용부담		
			중앙	지방 (광역, 기초)	사업자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77. 한센양로자 지원	서울: 3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비용부담		
			중앙	지방 (광역, 기초)	사업자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비용부담		
			중앙	지방 (광역, 기초)	사업자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서울: 50 지방: 80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비의 3분의 2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0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50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가. 개량(교체·보수)의 경우 광역시는 20%, 도청 소재지는 30%, 시·군은 5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비용부담		
			중앙	지방 (광역, 기초)	사업자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 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V. 재정정보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1. 법제 개편 대안

재정정보의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현황 및 문제점에 기초해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보 연계와 관련된 법률은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법률 검토의 기본 방향은 재정정보의 연계에 국한해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1) 재정정보의 연계(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포함)

(1) 현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50(2020.8.13.)〉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2020. 8 신설).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하여 국회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기존 3항).

⑤ 제3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에 기초한 문제점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97조의 2 ①항 및 ②항),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 매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사후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연계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2)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9조 2항 및 97조의 2 1~5항에 기초해 통합공개 플랫폼 운영 관점에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연계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97조의 2 1~2항에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할 경우 기재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 개발 시에 국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사후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재부와 감사원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행령에 국제기준(GFS, PSDS)의 정보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의견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재정정보의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원은 프로그램 개발 이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공한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감사원은 프로그램 개발 이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2020. 8 신설)	③.....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하여 국회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⑤<전단 신설>제3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표준연계 가이드라인 및

2) 국고보조금 정보의 연계

(1) 현황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2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현황에 기초한 문제점은 보조금 관리를 위해 단순히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를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재정정보를 어떻게 연계할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제26조의 8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단순히 최종 정산 결과만을 볼 수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실시간으로 국고보조금의 완벽한 연계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시간 보조금 정보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선 방안

국고보조금 정보는 예산 위주의 정보로 소관(중앙)부처별, 분야-부문, 비목별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정보는 사업 위주의 속성정보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보조금 정산 정보이다. 미래 지향적으로 행복e음 등 다양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포괄해 실시간 연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등에 기초해 연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3)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의견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호~9호(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항신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정보의 연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거버넌스 체계는 부처 간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재정정보의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부처 사업관리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범부처사업관리관점에서 재정정보의 연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93년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법(GPRA)을 제정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PART를 시행했으며, 2010년 성과평가 개정법(GPRAMA)을 제정해 성과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러한 법률과 연계해 DATA act, OPEN Gov't act 등을 제정해 재정정보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범부처 사업관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관련 사업, 일자리사업 등은 범부처 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dBrain을 통해 관리되는 다양한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연계의 관점에서 볼때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이 연계된 국고보조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연계 관점에서 거버넌스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 의견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DATA Act) (PUBLIC LAW 113-101)	연방기관 재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대, 연방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을 채택을 골자로 한 법안 -연방기관 재원의 직접지출, 계약, 출연 및 보조금 정보를 상호연계하여 납세자와 정책결정자가 연방지출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가능 - 광범위한 재정데이터의 일관성, 신뢰성, 접근성 강화 - 연방기관 자원 활용 관련 보고 체계 단순화 - 연방기관이 제출한 보조금 등 활용 정보의 정확성(정확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DATA Act, SEC 6. 연방기관 제출 데이터에 관한 감사관 검토) - DATA Act가 시행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재정정보를 생산하여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파편화, 유사(중첩), 중복 등 문제 개선에 기여, 감사원(GAO report 등)의 역할이 커짐
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OPEN) Government Data Act 2019 (115th CONGRESS)	Short-Titl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Title I – Federal Evidence-Building Activities -Title II – OPEN Government Data Act -Title III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Title IV – General Provisions

자료: 정성호(2020)

둘째, 재정정보의 연계를 위한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구체화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처 할거주의(sectionalism)에서 탈피해야 한다. 재정정보의 연계 활용 관점에서 재정 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재정 당국(기획재정부)이 관장하는 ‘(가칭)재정통계위원회’ 신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공표해 12월부터 시행될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IV. 결론

올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더불어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뉴딜을 통해 지능형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자는 것과 동시에 재정정보의 연계 활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정보의 연계는 생각하는 것과 같이 녹록지 않다. 중앙관서(부처)별로 다양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재정(dBrain), 지방자치단체의 재정(e-호조), 교육청 등의 시스템(K-edufine)이 대표적이다. 다만 별개의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개별 공개플랫폼에 공개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열린재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에, 교육청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이를 통합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를 연계해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의 연계는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계의 제약은 시스템 문제로 치부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 연계의 제약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일정 부분 법적 문제이기도 하고,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재정정보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포털 운영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dBrain과 열린재정’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 2와 제9조에, ‘e-호조와 지방재정365’와 ‘K-edufine과 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와 제60조의 2에,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포털명 동일)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의 정보를 통합해 ‘열린재정’에 공개하고 있으며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재정자주도(지방에 국한)와 상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통합해 공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추후 중앙, 지방, 지방교육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해 공개하는 재정정보의 포괄범위,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등에서 ‘표준연계로직’, ‘국제기준(GFS, PSDS)에 기초한 연계’, ‘국고보조금의 연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의 한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즉 재정정보 연계의 한계는 거버넌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제도의 문제도 치유해야겠지만 우선 거버넌스 문제부터 치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정보 연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개별 공개포털은 유지하되, 통합공개플랫폼(열린재정)에 집계되어야 하고,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시스템 개발 시(또는 사후 기능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준연계로직은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해 정부(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GFS), 채무를 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PSDS)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의 실집행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국고보조금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제를 개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시스템 개발 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시스템 개발 이후에라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한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처할거주의(sectionalism)에서 탈피해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다. 이는 최근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과 궤를 같이 한다.

〈참고문헌〉

IMF(2013).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IMF(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Jeong, S.(2018). Less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s with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DBAS), ADBI conference proceeding.

Jeong, S.and Oh.Y.(2019). Lessons and Recommendations from South Korea’s Experienes with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ublic Money & Management, 39(8): 599–601

재정개혁특별위원회(2018). 상반기 재정개혁권고안

정성호(2013). 국가통합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효율적 재정관리대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재정전문가네트워크 연구보고서.

정성호(2015).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수지지표에 관한 논의. 한국행정연구. 24권 3호, 1–31.

정성호(2020). 증거기반정책결정기제로써 성과관리.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승희(201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보고서 19-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재정법 등 개별 법률)

〈부록 1〉 GFS 기준 재정통계표

1. 일반정부 정부운영표(FY2018)
(단위: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1. 수익	527,021	214,104	74,268	△15,533	272,839	△166,073	633,788
1.1 조세	294,910	86,045	—	—	86,045	—	380,956
1.2 사회기여금	134,461	—	—	—	—	—	134,461
1.3 출연	5,988	101,212	69,639	△15,533	155,318	△161,305	0
1.4 기타수익	91,661	26,847	4,630	—	31,476	△4,768	118,370
2. 비용	472,992	180,810	65,602	△15,533	230,878	△166,073	537,798
2.1 피용자보상	48,351	32,042	32,320	—	64,362	—	112,712
2.2 재화와 서비스 사용	54,868	53,892	3,528	—	57,420	△4,731	107,557
2.3 고정자본소비	17,356	11,355	3,029	—	14,383	—	31,739
2.4 이자	19,220	773	455	—	1,229	△37	20,412
2.5 보조	20,413	57,156	9,083	—	66,239	—	86,651
2.6 출연	155,926	19,162	2,376	△15,533	6,005	△161,305	626
2.7 사회급여	138,694	—	—	—	—	—	138,694
2.8 기타비용	18,164	6,431	14,811	—	21,241	—	39,405
총운영수지(1-2+2.3)	71,385	44,649	11,695	—	56,344	—	127,729
3. 순운영수지(1-2)	54,029	33,294	8,667	—	41,961	—	95,990
3.1 비금융자산의순투자	8,172	24,658	4,309	—	28,967	—	37,139
3.1.1 고정자산	7,727	22,397	3,348	—	25,745	—	33,473
3.1.2 재고자산	△1,318	△459	—	—	△459	—	△1,777
3.1.3 기타유가물	—	—	—	—	—	—	—
3.1.4 비생산자산	1,763	2,719	961	—	3,681	—	5,444
순융자/순차입(1-2-3.1)	45,857	8,637	4,357	—	12,994	—	58,851
3.2 금융자산의 순취득	65,998	8,481	53	517	9,051	406	75,454
3.3 부채의 순부담	20,141	△156	△4,305	517	△3,943	406	16,603

2. 일반정부 재정상태표(FY2018)

(단위: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I. 비금융자산	940,820	1,112,114	95,709	—	1,207,823	—	2,148,643
1. 고정자산	451,712	693,591	64,209	—	757,800	—	1,209,512
1.1 건물 및 구조물	317,981	676,160	54,251	—	730,411	—	1,048,392
1.2 기계 및 장비	113,956	15,581	4,160	—	19,741	—	133,698
1.3 기타고정자산	19,775	1,850	5,798	—	7,648	—	27,422
2. 재고자산	10,204	4,334	—	—	4,334	—	14,539
3. 기타유가물	—	—	—	—	—	—	—
4. 비생산자산	478,904	414,189	31,499	—	445,688	—	924,593
4.1 토지	475,970	413,584	31,497	—	445,082	—	921,052
4.2 지하자산	—	—	—	—	—	—	—
4.3 기타 자연발생자산	—	—	—	—	—	—	—
4.4 무형 비생산자산	2,934	605	2	—	607	—	3,541
II. 금융자산	1,314,876	140,804	10,480	△234	151,050	△11,699	1,454,227
1. 현금 및 예금	167,453	88,759	7,678	—	96,437	—	263,889
2. 주식 이외 유가증권	166,108	50	—	—	50	△3,084	163,073
3. 용자	184,077	6,516	1,435	11	7,963	△7,404	184,636
4. 주식 및 기타지분	610,986	32,921	0	—	32,921	—	643,907
5. 파생금융상품	611	—	—	—	—	—	611
6. 기타미수계정	185,642	12,558	1,366	△245	13,679	△1,211	198,111
III. 부채	712,878	46,185	14,017	△234	59,968	△11,699	761,148
1. 주식 이외 유가증권	574,538	18,500	—	—	18,500	△3,084	589,954
2. 용자	84,156	13,021	13,522	11	26,554	△7,404	103,307
3. 주식 및 기타지분	988	—	—	—	—	—	988
4. 파생금융상품	439	—	—	—	—	—	439
5. 기타 미지급계정	52,757	14,664	495	△245	14,913	△1,211	66,460

3. 일반정부 거래명세(FY2018)

(단위: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I. 비금융자산	8,172	24,658	4,309	—	28,967	—	37,139
1. 고정자산	7,727	22,397	3,348	—	25,745	—	33,473
1.1 건물 및 구조물	△5,591	22,932	1,790	—	24,722	—	19,131
1.2 기계 및 장비	13,481	△545	377	—	△169	—	13,312
1.3 기타고정자산	△163	10	1,182	—	1,192	—	1,029
2. 재고자산	△1,318	△459	—	—	△459	—	△1,777
3. 가치저장자산	—	—	—	—	—	—	—
4. 비생산자산	1,763	2,719	961	—	3,681	—	5,444
4.1 토지	488	2,694	961	—	3,655	—	4,143
4.2 지하자산	—	—	—	—	—	—	—
4.3 기타 자연발생자산	—	—	—	—	—	—	—
4.4 무형 비생산자산	1,275	26	0	—	26	—	1,300
II. 금융자산	65,998	8,481	53	517	9,051	406	75,454
1. 현금 및 예금	20,690	7,272	506	—	7,779	—	28,468
2. 주식 이외 유가증권	5,875	20	—	—	20	△490	5,405
3. 용자	8,473	287	△76	△280	△70	409	8,812
4. 주식 및 기타지분	20,437	1,005	—	—	1,005	—	21,442
5. 파생금융상품	△1,325	—	—	—	—	—	△1,325
6. 기타 미수계정	11,848	△103	△377	797	317	488	12,652
III. 부채	20,141	△156	△4,305	517	△3,943	406	16,603
1. 주식 이외 유가증권	15,849	△207	—	—	△207	△490	15,152
2. 용자	3,714	△158	△4,329	△280	△4,767	409	△645
3. 주식 및 기타지분	△466	—	—	—	—	—	△466
4. 파생금융상품	△2,539	—	—	—	—	—	△2,539
5. 기타 미지급계정	3,583	209	25	797	1,031	488	5,101

4. 일반정부 거래외 명세 (FY2018)

(단위: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I. 비금융자산	8,844	14,390	263	－	14,653	－	23,497
1. 고정자산	5,720	△1,282	144	－	△1,138	－	4,582
1.1 건물 및 구조물	13,435	△3,097	113	－	△2,985	－	10,451
1.2 기계 및 장비	△4,096	1,790	20	－	1,810	－	△2,286
1.3 기타고정자산	△3,620	26	11	－	37	－	△3,583
2. 재고자산	△20	－	－	－	－	－	△20
3. 가치저장자산	－	－	－	－	－	－	－
4. 비생산자산	3,145	15,672	120	－	15,791	－	18,936
4.1 토지	3,257	15,675	120	－	15,794	－	19,052
4.2 지하자산	－	－	－	－	－	－	－
4.3 기타 자연발생자산	－	－	－	－	－	－	－
4.4 무형 비생산자산	△113	△3	△0	－	△3	－	△116
II. 금융자산	△16,805	△594	－	－	△594	－	△17,399
1. 현금 및 예금	3,813	－	－	－	－	－	3,813
2. 주식 이외 유가증권	6,100	－	－	－	－	－	6,100
3. 융자	410	△276	－	－	△276	－	134
4. 주식 및 기타지분	△24,253	△605	－	－	△605	－	△24,858
5. 파생금융상품	1,504	－	－	－	－	－	1,504
6. 기타 미수계정	△4,380	287	－	－	287	－	△4,093
III. 부채	7,129	△23	－	－	△23	－	7,106
1. 주식 이외 유가증권	4,653	△179	－	－	△179	－	4,474
2. 융자	24	457	－	－	457	－	481
3. 주식 및 기타지분	1,063	△5	－	－	△5	－	1,058
4. 파생금융상품	1,166	－	－	－	－	－	1,166
5. 기타 미지급계정	223	△296	－	－	△296	－	△74

〈부록 2〉 e나라도움 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지자체 부담금	합계
1	2020	(국)영유아보육료지원(0~2세)	경북 영주시	4,548,797	2,449,352	6,998,149
2	2020	(국)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경산시	19,591,159	6,530,386	26,121,545
3	2020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양산시	37,147,222	12,382,407	49,529,629
4	2020	0~2세 영유아보육료	울산 동구	15,589,000	5,195,822	20,784,822
5	2020	0~2세 영유아보육료	전북 익산시	19,889,250	6,621,000	26,510,250
6	2020	[국]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북 상주시	3,301,103	1,777,518	5,078,621
7	2020	[국]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북 안동시	8,448,165	4,549,012	12,997,177
8	2020	[국]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북 문경시	2,895,910	1,559,336	4,455,246
9	2020	국)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영천시	4,301,239	2,316,052	6,617,291
10	2020	영유아보육료	경기 포천시	8,426,904	4,537,564	12,964,468
11	2020	영유아보육료	서울 강서구	23,728,000	29,000,889	52,728,889
12	2020	영유아보육료	서울 은평구	16,009,000	19,566,556	35,575,556
13	2020	영유아보육료	서울 금천구	8,497,000	10,385,223	18,882,223
14	2020	영유아보육료	전남 목포시	21,000,000	6,974,772	27,974,772
1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전광역시	0	0	0
1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구광역시	0	0	0
1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구 남구	5,518,057	1,839,353	7,357,410
1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구로구	17,027,000	20,810,777	37,837,777
1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안성시	14,404,810	7,756,436	22,161,246
2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의정부시	36,996,916	12,332,305	49,329,221
2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의왕시	12,438,321	4,146,107	16,584,428
2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안양시	3,934,224	1,311,408	5,245,632
2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안양시	20,893,105	6,964,369	27,857,474
2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안양시	15,347,382	5,115,794	20,463,176
2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남양주시	59,831,436	19,943,812	79,775,248
2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김포시	40,570,692	21,845,758	62,416,450
2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구리시	14,737,461	4,912,487	19,649,948
2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화성시	88,426,130	47,614,070	136,040,200
2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동두천시	6,642,851	2,214,283	8,857,134
3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양주시	20,412,081	6,804,027	27,216,108
3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원 원주시	29,732,859	9,910,953	39,643,812

구분	회계연도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계
3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안산시	41,995,380	22,612,898	64,608,278
3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시흥시	39,776,546	21,418,140	61,194,686
3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원 강릉시	12,300,690	4,100,230	16,400,920
3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북 울진군	1,705,404	918,294	2,623,698
3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용인시	92,851,922	30,950,640	123,802,562
3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성남시	30,669,804	16,514,510	47,184,314
3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원 화천군	1,529,710	823,690	2,353,400
3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광주시	31,774,338	17,109,260	48,883,598
4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가평군	2,668,728	1,437,008	4,105,736
4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원 속초시	5,349,870	1,783,290	7,133,160
4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시 양천구	14,666,000	17,925,111	32,591,111
4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광명시	21,923,481	7,307,827	29,231,308
4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종랑구	14,526,000	17,754,000	32,280,000
4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구 서구	8,242,526	2,747,509	10,990,035
4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원 태백시	1,589,304	855,780	2,445,084
4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서대문구	9,305,000	11,372,777	20,677,777
4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북 보은군	1,052,241	566,592	1,618,833
4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송파구	25,982,000	31,755,777	57,737,777
5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북 충주시	13,278,154	7,149,774	20,427,928
5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북 증평군	2,913,145	1,568,616	4,481,761
5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구 동구	24,704,537	8,234,846	32,939,383
5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성남시	11,111,869	5,983,314	17,095,183
5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북 괴산군	716,037	385,560	1,101,597
5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파주시	39,902,981	13,300,993	53,203,974
5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성남시	12,025,000	6,475,000	18,500,000
5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부천시	57,062,640	19,020,880	76,083,520
5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구 수성구	20,413,355	6,804,451	27,217,806
5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구 달서구	36,299,368	12,099,789	48,399,157
6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전북 임실군	585,000	315,000	900,000
6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북 고령군	1,033,514	556,508	1,590,022
6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광역시	0	0	0
6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0	0	0
6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강원 철원군	2,630,810	1,416,590	4,047,400
6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강동구	17,611,000	21,524,556	39,135,556
6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중구	1,602,819	534,273	2,137,092

구분	회계연도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계
6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영도구	4,570,669	1,523,556	6,094,225
6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연제구	12,181,341	4,060,447	16,241,788
6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북 경주시	16,809,792	4,202,448	21,012,240
7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동구	3,517,095	1,172,365	4,689,460
7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기장군	17,145,374	5,715,124	22,860,498
7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해운대구	21,615,175	7,205,058	28,820,233
7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사하구	20,123,492	6,707,830	26,831,322
7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금정구	11,144,650	3,714,883	14,859,533
7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강서구	19,287,813	6,429,271	25,717,084
7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상남도	0	0	0
7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주도	42,910,000	23,105,384	66,015,384
7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주도	12,058,000	6,492,769	18,550,769
7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광진구	11,268,000	13,772,000	25,040,000
8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전북 정읍시	4,680,000	2,520,000	7,200,000
8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창원시	84,435,557	28,145,186	112,580,743
8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서구	3,677,189	1,225,730	4,902,919
8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산 동래구	14,871,440	4,957,147	19,828,587
8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창원군	1,932,353	1,040,498	2,972,851
8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산청군	616,464	331,942	948,406
8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합천군	701,573	377,770	1,079,343
8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진주시	24,718,037	13,309,712	38,027,749
8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사천시	7,070,084	3,806,968	10,877,052
8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남 하동군	830,319	447,094	1,277,413
9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인천 동구	3,847,000	1,282,759	5,129,759
9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인천 남동구	39,645,000	13,218,810	52,863,810
9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인천 연수구	32,974,000	10,995,226	43,969,226
9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인천 옹진군	475,000	256,334	731,334
9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세종시	42,919,500	23,110,500	66,030,000
9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0	0	0
9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천안시	61,425,000	20,475,000	81,900,000
97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공주시	4,186,000	2,254,000	6,440,000
9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아산시	36,707,500	12,235,833	48,943,333
9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보령시	4,849,000	2,611,000	7,460,000
10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논산시	6,103,500	3,286,500	9,390,000
10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서천군	1,300,000	700,000	2,000,000

구분	회계연도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계
10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부여군	1,683,500	906,500	2,590,000
10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남 당진시	12,993,500	6,996,500	19,990,000
10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전 서구	37,653,563	12,551,187	50,204,750
10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전북 장수군	487,500	262,500	750,000
10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전북 부안군	1,795,000	967,000	2,762,000
107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0~2세)	부산 수영구	8,928,068	2,976,023	11,904,091
10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강원 횡성군	1,631,500	878,500	2,510,000
109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강원 삼척시	2,961,270	1,594,530	4,555,800
11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충북 청주시	71,979,360	23,993,120	95,972,480
11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서울 용산구	7,686,000	9,394,000	17,080,000
11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경기 군포시	21,450,011	7,150,004	28,600,015
11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경기 연천군	2,137,328	1,150,870	3,288,198
114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경기 수원시	98,507,596	32,835,866	131,343,462
11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경기 오산시	25,601,401	8,533,800	34,135,201
11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국)	서울 강북구	8,978,000	10,973,111	19,951,111
117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경기도	0	0	0
118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도봉구	11,409,000	13,944,333	25,353,333
119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만0~2세)	서울 동대문구	11,777,000	14,394,111	26,171,111
120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여주시	5,938,946	3,197,894	9,136,840
121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기 이천시	17,371,564	9,353,920	26,725,484
122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충북 옥천군	1,789,768	963,720	2,753,488
123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종로구	4,547,000	5,557,444	10,104,444
124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45:38.5:16.5)	서울 성동구	11,451,000	13,995,667	25,446,667
125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시비)	서울 강북구	0	0	0
126	2020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대구 달성군	30,147,714	10,049,238	40,196,952
127	2020	영유아보육료(국)	충남 금산군	1,397,500	752,500	2,150,000
128	2020	영유아보육료(국)	대전 동구	16,172,603	5,390,867	21,563,470
129	2020	영유아보육료(국)	대전 유성구	36,368,129	12,122,711	48,490,840
130	2020	영유아보육료(국)	경북 포항시	40,681,638	13,560,546	54,242,184
131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상북도	0	0	0
132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봉화군	544,147	293,002	837,149
133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청송군	441,706	237,842	679,548
134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울릉군	104,298	56,160	160,458
135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군위군	270,976	145,910	416,886

구분	회계연도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합계
136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성주군	996,446	536,548	1,532,994
137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강원 고성군	768,170	413,630	1,181,800
138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칠곡군	9,855,832	3,285,277	13,141,109
139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청도군	742,690	399,910	1,142,600
140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김천시	9,089,966	4,894,597	13,984,563
141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전남 무안군	4,549,463	2,449,710	6,999,173
142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강원 양양군	648,440	349,160	997,600
143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대구 중구청	4,734,700	1,578,233	6,312,933
144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구미시	39,991,300	21,533,777	61,525,077
145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북 예천군	3,080,194	1,658,566	4,738,760
146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충북 진천군	5,139,799	2,767,584	7,907,383
147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충북 음성군	6,160,025	3,316,936	9,476,961
148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전북 무주군	715,000	385,000	1,100,000
149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부산 남구	15,238,447	5,079,483	20,317,930
150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경남 통영시	6,828,181	3,676,712	10,504,893
151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광주광역시	0	0	0
152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광주 서구	24,235,435	8,078,478	32,313,913
153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광주 북구	34,158,075	11,386,025	45,544,100
154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광주 광산구	43,587,649	14,529,217	58,116,866
155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충남 계룡시	2,918,500	1,571,500	4,490,000
156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	충남 예산군	2,015,000	1,085,000	3,100,000
157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강원 영월군	985,140	530,460	1,515,600
158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경북 영덕군	1,106,875	596,010	1,702,885
159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경기 평택시	46,529,222	11,632,305	58,161,527
160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경북 의성군	802,315	432,016	1,234,331
161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대전 대덕구	11,783,148	3,927,716	15,710,864
162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만0~2세)	울산 울주군	14,620,000	7,871,408	22,491,408
163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전남 신안군	447,787	241,116	688,903
164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경북 영양군	248,534	133,826	382,360
165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충북 제천시	7,353,479	3,959,566	11,313,045
166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서울 중구	4,510,000	5,512,223	10,022,223
167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국)	충북 영동군	1,537,340	827,798	2,365,138
168	2020	영유아보육료지원(성인지)	전남 강진군	840,400	452,524	1,292,924

자료: 포털 e나라도움_보조사업 현황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발 간 월 2020년 12월

발 행 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인 쇄 처 디자인아이 Tel. 02-6358-2124

I S B N 979-11-91094-04-6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02-6908-8567

jazzsh@kpfis.or.kr



9 791191094046 93350